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8조의2)
-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9조)

-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제3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3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3
 - 전자메일 : asjasj123@korea.kr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오산시(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오산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5.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용역비 등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9.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에 거주하는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 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4.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적극 지원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및 관급공사수급인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

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② 관급공사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추진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8조(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 수행 시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9조(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장의 규모나 현장 출입 여건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량을 예상하여 전자카드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의 수급인은 착공 후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출

퇴근을 기록하고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노동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전자카드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말기 및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전자카드제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11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노동자 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노동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노동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노동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4조(적용)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거짓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제16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역건설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시장은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8조의2(대가의 현금 지급)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제7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시장은 매년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향토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외지사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시 경리관은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제30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그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나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적극적 검토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나 공구분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

다.

제30조의3(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근로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오산 시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③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오산시 거주 오산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제30조의5(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31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와 같이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건의사항,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

2.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3.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 · 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②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체불임금 등의 신고대상은 「근로기준법」 및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으로 한다.

④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2.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하도급계약서, 녹취, 임금지급 통장내역 등 포함)를 첨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자 및 대리인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신 건설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향토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예우 등)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 주요행사시 초청
2. 필요시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시정 소식지에 홍보

제40조(적용배제) 시장은 제38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부도·회회·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4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성명	(인)
	주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성명	(인)
	주소	
	사업자번호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서(월)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W)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원정(W)
7.	기지급금액	:	금 원정(W)
8.	금회청구액	:	금 원정(W)
	(계약상대자)	:	금 원정(W)
	(하도급인)	:	금 원정(W)
9.	잔여금액	:	금 원정(W)

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상호명:
주 소:
대표이사 ○○○ (인)

오산시장 귀하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노동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노동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노동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 사 감 독 (인)

오산시장 귀하

공사노동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구분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 1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 2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노동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 사 감 독 (인)